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71
----------	------

2021년 05월 0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박순규 의원 외 20명
- 나. 제안일 : 2021년 04월 01일
- 다. 회부일 : 2021년 04월 06일
- 라. 상정일 :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순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 운영·관리하는 배움관(본관)의 연면적은 5,584m²이고 창의관(별관)은 4,266m², 다솜관(생활관)은 6,408m², 어린이집은 399m²임. 이중 노후로 인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솜관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시설물안전법」 1~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입법예고(2021. 4. 9. ~ 4. 1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 시행(2018.1.18)됨에 따라 시설물(제1종~제3종)중 안전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생략)</p>	<p>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물 이용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

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근거 법령	설명	비고
제1종시설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	신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폐지

-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기존 제1·2종시설물에 제3종 시설물을 추가 하였으며,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제3종 시설물 도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하도록 하였음.

- 현재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시설물 3종에 해당하는 인재개발원 건물은 다층관(3종)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다층관 현황]

연면적	5,584 m ²		비고
지1층	162	창고 등	
1층	1,257	식당, 체력단련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층	1,056	숙소(6실), 도서관, 의무실, 차량지원실 등	
3층	1,087	숙소(6실), 강의실(6~9)	
4층	1,115	숙소(12실), 강의실(10~13), 다례실(예다원)	
5층, 옥탑	907	숙소(12실)	

- 다만,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건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횟수가 결정되는 바, 다층관의 경우 연도별 안전점검(18년 12월→1회, 19년→2회, 20년 1회)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다층관(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내역 - '18년도 12월 - '19년도 4월, '19년도 10월 - '20년도 10월	<input type="checkbox"/> 다층관 3종 지정 후 보수·보강 내역 - '20년도 8월 / 옥상방수공사
--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또한, 인재개발원 배움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의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사무공간과 강의공간으로 복합 활용하고 있고, 건물 준공일(1979.8.31)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하였는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안 심사 당시 각종 시설물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념적 징표의 차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 법률의 규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이를 감안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재개발원 시설물(1~3종) 지정현황]

건물명	연면적(m ²)	준공일자	시설물 지정 현황
배움관	6,408.0	1979.8.31	미대상
창의관	4,266.0	2010.6.21 2011.7.19	미대상
다솜관	5,584.0	1979.8.31	3종 시설물(`18.6.28.)
어린이집	399.5	2008.5.26	미대상

※ 인재개발원 시설중 배움관(본관), 창의관(별관), 어린이집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3종의 시설물 대상이 아님(참고자료).

○ 한편, 인재개발원은 강북이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바, 사업 추진을 감안한 시설물 관리와 이전에 따른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재개발원 이전 사업현황

- 이전위치 : 강북구 수유동 522번지 일원(강북 수유영어마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부지면적 : 64,982m²(가용면적 20,804m²)
- 건축규모 : 연면적 25,052m²
 - ※ 이전지(강북 수유영어마을) 기존 건축물 : 연면적 12,431m²(16개동)
 - ※ 인재개발원(서초동) 기존 건축물 : 연면적 17,408m²(5개동)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7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덕,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 운영·관리하는 배움관(본관)의 연면적은 5,584m²이고 창의관(별관)은 4,266m², 다솜관(생활관)은 6,408m², 어린이집은 399m²임. 이중 노후로 인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솜관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시설물안전법」 1~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 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